

예비비지출요구서

(단위: 원)

	예 산 과 목					예산액 ①	지출액 ②	예산 잔액 ①-②	금 후 소요액 ③	예 비 지출요구 액 ③-(①- ②)	비고
	정 책	단 위	세 부	편 성 목	통 계 목						
정책기획 담당관	구정현 안기획 조정및 효율성 제고	규제개혁및 법제업무 운영	송무수 행	배상금등	배상금등	90,000,000	3,358,150	86,641,850	327,972,690	241,331,000	배상금지급

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

서울중앙지방법원(제10부) 판결문 2013가합503149 / 2013가합505015 부당이득금 배상금 지급, 서울 서부지방법원(제2부) 판결문 2015나35120 부당이득금 배상금 지급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배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되었고 지급지연시 추가이자발생 및 지급에 따른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어 긴급예산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우리구 배상금 예산(정책기획담당관) 잔액이 부족하여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함.

2016년 4월 일

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(인)

정책기획담당관 귀하